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15-898호

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구역 지정·공고

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른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자 지정하는 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·공고합니다.

2015년 11월 16일

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

1. 시행일자: 공고일로부터 즉시

2. 공고내용(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구역 지정)

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라목 중 “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·공고하는 구역”을 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(용도지역의 지정)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(용도지역의 세분)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.

3. 기타사항: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구역 지정·공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건축과(☎310-4591~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